

## 4.1.26 홍보물관리규정

제정 2002. 01. 23.  
전부개정 2024. 12. 04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홍보물의 표시장소·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·유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미관풍치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홍보물"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표시되고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·입간판·현수막·벽보·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.
2. "게시시설"이라 함은 홍보탑·홍보판과 기타 공작물로서 홍보물을 게시 또는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홍보물 허가)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·장소 및 물건에 홍보물 또는 게시시설(이하 "홍보물"이라 한다)에 홍보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는 승인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1. 학교시설지구내
  2. 학교 모든 건물 내·외
- ② 홍보물에 대한 승인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.
1. 교무처 : 교원 단체에서 게시하는 홍보물
  2. 학생복지처 : 총학생회, 총동아리 연합회, 학과 및 부서에서 학생들에게 홍보목적으로 게시하는 홍보물
  3. 사무처 : 직원단체에서 게시하는 홍보물 및 1호, 2호에 속하지 않는 홍보물
- ③ 허가된 홍보물에 대해서는 지정된 게시판 및 장소 이외에는 설치 및 부착할 수 없다.
- ④ 홍보물의 게시기간은 게시일로부터 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
- ⑤ 승인부서에서는 홍보물 하단에 확인도장으로 날인한다.
- ⑥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학교홍보(행사홍보, 입학홍보, 성과홍보등)에 해당되는 홍보물은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4조(홍보물 금지 또는 제한) 사무처에서는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·장소 또는 물건에는 미관풍치 및 학교를 깨끗이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홍보물의 표시·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

홍보물 표시를 금지 하는 곳은 다음과 같다.

- 1) 모든 건물내 벽면
- 2) 가로수
- 3) 유류탱크 및 수도탱크
- 4) 소화전 및 화재경보기
- 5) 도로표지, 교통안전표지
- 6) 담장

제5조(금지 홍보물)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홍보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.

1. 기타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
2.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
3.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
4. 청소년의 보호·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

제6조(위반에 대한 조치) ① 사무처에서는 승인되지 않거나 게시기간이 경과한 홍보물, 지정된 곳 외에 게시된 홍보물은 제거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1.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12월 04일부로 시행한다.

제2조(규정명) 이 규정의 명칭은 2024년 12월 04일부로 광고물관리규정에서 홍보물관리규정으로 변경한다.